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8877   |
| 의 퇴 인 | 박수민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5.4.9. |
| 추계번호  | 25D1389   |

#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·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

## 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특별점검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, 소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설치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7억 3,200만원, 2027년 38억 9,700만원 등 2026~2027년까지 총 96억 2,9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특별점검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<br>(안 제6조·제16조 등) | 5,667 | 3,864 | 9,531 |
| 소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설치<br>(안 제15조·제17조)      | 65    | 33    | 98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732 | 3,897 | 9,629 |

- 주: 1. 특별점검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(안 제6조·제16조 등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, 소위원회와 자문기구 설치(안 제15조·제17조)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함  
2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조<br>(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등)·안 제16조(사무처의 설치) 등 |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점검위원회는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,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특별점검 완료 후에도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(사무처는 잔존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존속)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점검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, 위원을 제외한 특별점검위원회의 정원은 70명이고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  | 안 제15조(소위원회의 설치)·안 제17조(자문기구의 설치) |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점검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3  | 안 제27조(청문회의 실시)                   |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·감정·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          | 재량규정 |
| 4  | 안 제34조(업무의 위임·위탁 등)               |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에 위임·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5  | 안 제37조(운송비·여비 등)                  | 제정안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, 증언 등을 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운송비·여비·일당·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 | 의무규정 |
| 6  | 안 제38조(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)           | 특별점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특별점검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6조(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등)·안 제16조(사무처의 설치) 등 | ○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15조(소위원회의 설치)·안 제17조(자문기구의 설치)      | ○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27조(청문회의 실시)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| 청문회 실시 횟수, 회당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      |
| 4  | 안 제34조(업무의 위임·위탁 등)                    | X    | 업무의 위탁 여부, 해당 업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 |
| 5  | 안 제37조(운송비·여비 등)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| 운송비 및 여비 지급 건수, 항목별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|
| 6  | 안 제38조(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)                | —    | 사무국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특별점검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,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설치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
- 제정안에 따른 특별점검위원회와 사무처의 정원은 총 73명이고, 파견 공무원 30명을 제외하여 총 43명(위원장 1명, 상임위원 2명, 사무처 직원 40명)이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
  - 제정안에서 상임위원 3명을 두되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, 사무처의 정원은 70명으로 하되 관계 기관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
  - 관계 기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30명의 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 등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출하던 비용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
- 유사사례인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을 참고하여 직급별 인원, 1인당 보수, 기본경비 비율 등을 적용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<sup>1)</sup>
-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1년, 연장기간 최대 6개월, 잔존사무 처리 3개월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~2027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|              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~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 | 2.5% | 5.1% | 3.6% | 2.3% | 1.9% | 2.0% | 2.0% | 2.0%  |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특별점검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(안 제6조·제16조 등)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상시 근무자에 소요되는 비용(보수, 기본경비, 기관부담금, 자산취득비), 비상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, 사무실 임차료로 한정하여 추계
- 상시 근무자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, 직급별 인원·직급별 보수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한 후, 기본경비 비율, 기관부담금 요율,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하여 산출
  - (보수) 2026년 33억 4,200만원, 2027년 24억 2,900만원으로 추정
    - 신규 채용되는 인원은 총 43명(위원장 1명, 상임위원 2명, 사무처 직원 40명)
    - (1인당 보수) 2025년 기준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직급별<sup>2)</sup> 보수에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상승률<sup>3)</sup> 적용
    - 위원회의 활동기간, 연장기간, 잔존사무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보수는 12개월분이고, 2027년 보수의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은 6개월분, 사무처 직원은 9개월분
  - (기관부담금) 2026년 4억 3,500만원, 2027년 3억 1,800만원으로 추정
    -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값 적용<sup>4)</sup>
  - (기본경비) 2026년 13억 6,300만원, 2027년 9억 9,600만원으로 추정
    -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2025년 기준 기본경비 비율은 41%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
  - (자산취득비) 2026년 3억 6,400만원
    -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정원 73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4,981,000원<sup>5)</sup>을 곱하여 산출

2)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2025년 예산안 각목명세서

3) 2023~2025년 평균 상승률 2.4%를 적용

4) 2026년 13.1%, 2027년 13.1%

5)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결과, 2020년 기준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,197,000원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1인당 자산취득비 산출

[표 2] 보수·기관부담금·기본경비·자산취득비 추정: 2026~2027년

| 구분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2026        | 2027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인당 보수<br>(단위: 원) | 위원장(장관급)  | 165,777,408 | 169,756,066 |
|                   | 상임위원(차관급) | 157,925,376 | 161,715,585 |
|                   | 고위        | 138,283,291 | 141,602,090 |
|                   | 4급        | 104,292,041 | 106,795,050 |
|                   | 5급        | 83,335,447  | 85,335,497  |
|                   | 6급        | 62,712,783  | 64,217,890  |
|                   | 7급        | 48,456,006  | 49,618,950  |
| 보수<br>(단위: 백만원)   | 위원장(1명)   | 166         | 85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상임위원(2명)  | 316         | 162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고위(2명)    | 277         | 212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4급(4명)    | 417         | 32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5급(7명)    | 583         | 448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6급(18명)   | 1,129       | 867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7급(9명)    | 436         | 335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소계(43명)   | 3,324       | 2,429       |
| 기관부담금(=a×요율, 백만원) |           | 435         | 318         |
| 기본경비(=a×41%, 백만원) |           | 1,363       | 996         |
| 자산취득비(단위: 백만원)    |           | 364         | -         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비상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의 경우, 비상임위원 수, 참석수당, 개최횟수를 곱하여 산출

- 제정안에서는 6명의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규정하였고, 본 추계에서는 비상임위원의 50%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참석수당(안전검토 포함) 40만원, 월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- 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은 12개월, 2027년은 6개월 동안 참석수당을 지급
- 추계결과, 2026년 5,800만원, 2027년 2,900만원으로 추정
  - 2026년: 5,800만원 = 3명×40만원×월 4회×12개월
  - 2027년: 2,900만원 = 3명×40만원×월 4회×6개월

□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, 정원,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(보증금, 월세, 관리비 등 포함), 임차기간을 곱하여 산출

- 특별점검위원회의 정원은 73명이고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는 14만원<sup>6)</sup>

- 활동기간 및 연장기간, 잔존사무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은 12개월, 2027년은 9개월 동안 임차료 발생
- 추계결과, 2026년 1억 2,300만원, 2027년 9,200만원으로 추정

□ 추계결과, 특별점검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9억 2,400만원, 2027년 34억 8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특별점검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| 2026  | 2027  | 합계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보수 등     | 4,743 | 3,363 | 8,106 |
| 비상임 참석수당 | 58    | 29    | 87    |
| 사무실 임차료  | 123   | 92    | 215   |
| 합계       | 4,924 | 3,484 | 8,408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나. 소위원회와 자문기구 설치(안 제15조·제17조)

- 제정안에 따라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각 1개씩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를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한정하여 추계
- 본 추계에서는 소위원회와 자문기구의 민간위원 수, 참석수당, 개최횟수를 곱하여 산출
  - 본 추계에서는 소위원회와 자문기구의 민간위원을 각 3명씩, 참석수당은 각각 40만원(안전검토 포함), 20만원, 개최횟수는 각각 월 4회, 월 1회로 가정
  - 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은 12개월, 2027년은 6개월 동안 참석수당을 지급
- 추계결과, 2026년 6,500만원, 2027년 3,300만원으로 추정
  - 2026년: 소위원회 5,800만원(= 3명×40만원×월 4회×12개월), 자문기구 700만원(= 3명×20만원×월 1회×12개월)

6)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「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(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, 운영 단가 현황 연구), 63쪽」의 임차청사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 130.2천원/명을 참고하였고,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- 2027년: 소위원회 2,900만원(= 3명×40만원×월 4회×6개월), 자문기구 400만원(= 3명×20만원×월 1회×6개월)

#### 다. 추계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특별점검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, 소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설치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7억 3,200만원, 2027년 38억 9,700만원 등 2026~2027년까지 총 96억 2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특별점검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 | 5,667 | 3,864 | 9,531 |
| 소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설치     | 65    | 33    | 98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| 5,732 | 3,897 | 9,629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로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참고하여 직급별 인원, 1인당 보수, 기본경비 등을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고,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이미연 | 김안나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|
| 이미연 | 02-6788-4661 | mylee@assembly.go.kr |